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(의안번호 제81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재출일자 및 재출자 : 2003. 9. 1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9. 2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0. 17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폐지이유

○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(대통령령)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(국무총리훈령)이 폐지됨에 따라

○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의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30일 제정되었으나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(대통령령)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(국무총리훈령)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

으로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공문지시에 의하여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함은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　　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3. 10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